

방통위, 구글·애플의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및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추진

-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규모 과징금 검토 중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지난 ’22년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앱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23년 10월 6일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우선 앱마켓사업자인 구글·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애플이 국내 앱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정조치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앱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는 한편,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끝.

담당 부서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	책임자	과 장	조주연 (02-2110-1530)
		담당자	사무관	최준희 (02-2110-1531)

